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기능 등 정비
(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2항, 안 제10조, 안 제13조)
-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의무화(안 제9조제3항)
-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

다. 참고사항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6조
- 입법예고 : 2024. 8. 29. ~ 9. 18.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 "문자해득교육" →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변경
-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대적 교육 요구를 반영
- "연구·정책개발·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변경
- 연구와 정책 개발 중심에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범위를 확대

제9조(평생교육시설)

- 제1항 단서 삭제 및 제3항 신설: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을 의무화하여 근거리 학습권 보장

제10조(평생교육 진흥 사업)

- 기존 제1호 및 제6호 삭제

- 새로운 제7호~제9호 신설: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

제12조(운영비 변경)

- "운영비와 학습경비" → "필요한 경비"로 변경함으로 유연한 예산 운용 가능성 확대

제13조(평생학습관의 운영 인력 배치)

-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장 및 직원 포함 명시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역할)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 "평생학습센터"로 간소화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동(洞)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를 보장하여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종사자 지원을 통해 구민 중심의 평생교육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접근성과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재정·운영 계획 및 사전 홍보와 의견 수렴의 선행이 필요하고,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방안과 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